

1. 개정이유

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적 요건인 “가로구역”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로구역 요건 개선(안 제2조 및 제9조)

도로, 예정도로,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던 것을 사업시행자가 신설·변경 계획을 제출한 기반시설인 “예정기반시설”까지 확대 허용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0. 22. ~ 12. 1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기반시설”을 “기반시설 및 예정기반시설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·신청을 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을 신설·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기반시설

- 1)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
- 2)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
- 3)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

제9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기반시설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(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의 일부가 기반시설예정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)

가. 제2조제3항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

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

나.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을 신설·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가로구역의 범위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 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. 1. (생 략) 2. 다음 각 목의 <u>기반시설</u> 가. ~ 마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가로구역의 범위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기반시설 및 예</u> <u>정기반시설</u>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<u>바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</u> <u>· 신청을 하기 위하여</u> <u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</u> <u>관한 법률」 또는 그 밖의</u> <u>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부</u> <u>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을</u> <u>신설·변경할 수 있는 계</u> <u>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</u> <u>에 따른 예정기반시설</u> 1) <u>법 제18조 및 제19조에</u> <u>따른 사업시행자 지정</u> 2) <u>법 제22조에 따른 주민</u> <u>합의체 구성 신고</u>

제9조(조합설립인가 등) ① (생략)

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1. ~ 8. (생략)

<신 설>

3)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

설립인가 신청

제9조(조합설립인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기반시설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(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의 일부가 기반시설예정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)

가. 제2조제3항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

나.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을 신설·변경하

③ (생 략)	<u>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</u> <u>정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</u> <u>서</u>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524